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78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김태년·한정애·이소영

이강일 · 정성호 · 박희승

송옥주 • 전진숙 • 윤후덕

이재정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 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 비용 지원 사업 제51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 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② (생 략)	이용요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
	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u>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u>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
	<u>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u>
	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제48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용</u>
	요금의 감면 비용 지원 사업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	제51조(부담금) ①
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u>제15조</u> 에 따른 송	<u>제15조제1항</u>
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	
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